

요양시설(장기요양기관) 방역수칙 변경 안내(수정)

□ 추진배경

- 7월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, 요양시설도 집단감염 및 선제검사 양성을 증가 등 방역상황 변화
- 이에,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*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강화

* 적용시설 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

□ 변경사항

- 종사자 선제검사
 - 돌파감염,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**예방접종·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 전면 시행**
 - * (現)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+확진 이력자는 검사 면제 → (변경)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,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
 - 유증상자, 휴가 복귀자 등 **필요 시 자가검진(RAT) 추가실시**
- 외부 접촉
 - ① 필수 외래진료 목적 외 **외출외박 금지**, ②접촉면회는 **비접촉 대면 면회**로 전환 ③ **외부강사 프로그램**은 전체 시설에서 **주야간보호 센터에 한해 허용**

< 방역수칙 변경 내용 >

구분	현재	변경(7.25~)
선제검사		
종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 1회 PCR *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,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 면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 1회 PCR *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,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* 유증상 등 필요 시 RAT 추가검사
신규입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소시 1회 PCR, 음성 확인시까지 격리 *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	(좌 등)
외부접촉		
면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En접촉면회 허용 * 방역수칙 준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접촉 대면 면회 * 접촉면회 금지
외출·외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 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출·외박 금지 * 필수 외래진료만 외출외박 허용
외부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 용 * 전체 장기요양기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En주야간보호센터만 허용 *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, 호흡기 증상 확인,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

□ 적용시기 : '22.7.25(월)~, 별도 안내 시까지

*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